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 등이 부담하는 어린이집 급·간식비용
별도 산정 등 〉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60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국가 등이 부담하는 어린이집 급·간식비용 별도 산정 등	3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을호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4.

3. 회부연월일 : 2026. 2.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해 보육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에는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 운영비 등이 포함됨.

그런데 2023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은 1세반 기준 월 55,000원 수준으로 영양가 높은 급·간식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표준보육비용의 구성 항목으로서 산출되다 보니 별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유아(3~5세)의 급·간식비가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차이나며, 같은 어린이집이라도 지역별로 급·간식비 지원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3~5세 유아 1인당 급·간식비 지원액은 서울의 경우 유치원

에서 5,101원이 지원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842원이 지원되어 약 6배의 차이를 보임. 충남의 경우 유치원은 3,330원이 지원되지만, 어린이집은 600원이 지원되어 약 5.5배의 격차가 나타남.

이에 따라 급·간식비용을 표준보육비용과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및 제7항).

Ⅲ. 검토의견

1. 국가 등이 부담하는 어린이집 급·간식비용 별도 산정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때, 급·간식비용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표준보육비용과 별도로 급·간식비용을 결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때 어린이집 급·간식비용은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후단 신설 및 제7항).

현행	개정안
제34조(무상보육) ① ~ ③ (생략)	제34조(무상보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 ----- ----- ----- ----- ----- -. 이 경우 어린이집 급·간식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	⑦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용을-- ----- -----

를, 최저임금 상승률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u>표준보육비용</u> 을 결정하여야 한다.	----- ----- -----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 비용을-----.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34조에서는 무상보육의 원칙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무상보육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¹⁾.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교육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통교부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되,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법률 제1667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203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9호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료(0세~2세)’를 부모보육료(바우처) 및 기관보육료(보조금)로 지원하고,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 3세 이상 영유아에 대해서는 유아학비(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로 지원하고 있음. < 참고자료1: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개요 >

[영유아 연령별 무상지원 비교]

구분	만 3세 미만	만 3세 이상
대상	어린이집 이용자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자
무상지원 내용	부모보육료(바우처), 기관보육료(보조금)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과정비

[2026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월 기준, 단위: 천원)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장애아
부모보육료	584	515	426	634
기관보육료	693	377	256	742
계	1,277	892	682	1,376

* 주: (부모보육료)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2세 아동의 부모에게 지원, 부모의 국민행복카드 결제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급 ※ 재원 아동의 출석일수에 따라 지원
(기관보육료)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에 대해 만0~2세, 장애아보육시 지원 ※ 1일 이상 출석시 전액 지원
* 자료: 교육부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026년도 유아학비(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단가]

(월 기준, 단위: 천원)

구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보육료)	100	280	280
방과후과정비	50	70	70
계	150	350	350

* 자료: 교육부

□ 그런데, 어린이집 보육료의 경우에는 급·간식비를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산정하는 유치원 유아학비와 달리 급·간식비를 포함²⁾하여 산정함에 따라 어린이집 급·간식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거나 어린이집 급·간식비용을 인상할 경우 다른 비용이 삭감될 수 밖에 없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교육의 질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현재 만 3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유아의 급·간식비 지원 현황을 보면, 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 외 급식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 내에서 급·간식비를 집행하고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유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 방식의 차이로 인해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표준보육비용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인건비, 2. **급식·간식의 재료비**, 3. 교재·교구비, 4. 시설 설비비, 5. 관리 운영비

[표준보육비용과 표준유아교육비의 비교3)]

구분	표준보육비용	표준유아교육비
목적	무상보육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용 산정	무상교육(누리과정)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용 산정
주체	교육부장관	교육부장관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산출 기준 (시행규칙)	1. 보육교직원 인건비 2. 급식·간식의 재료비 3. 교재·교구비 4. 시설 설비비 5. 관리 운영비	1. 공통과정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물건비 2. 공통과정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공통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 자료: 교육부

□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보육료에서 급·간식비를 분리하여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조사도 어린이집의 보육료 산정을 위한 조사와 함께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교육 수준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보육료 외에도 별도로 급·간식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면, 경감된 급·간식비만큼 누리과정에 사용할 수 있어 어린이집 재원 유아에게 더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유아교육법」과의 체계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유아교육법」 제24조4)에 따르면 표준유아교육비의 경우 표준보육비용과 같

3) 무상교육·보육에 필요한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의 산정을 위한 근거로 현행법은 각각 ‘표준보육비용’과 ‘표준유아교육비’를 두고 있음

이 그 산정에 대해서는 교육부령으로 위임할 뿐 비용의 구체적인 산출기준이나 급·간식비 별도 산정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급·간식비의 별도 산정이 적정한 급·간식비의 반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표준유아교육비의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 상황에 따라 그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급·간식비를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 급간식비의 반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교육부는 보육사업안내⁵⁾에 따라 어린이집 급·간식 재료비의 경우 시·도교육청의 별도 재원을 우선 활용하도록 지침을 두고 있고,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린이집 재원 유아를 대상으로 급·간식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금액에 있어서는 시·도별로 차이가 있음.

4) 「영유아보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5)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교육부 지침), p. 92

-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불가피한 필요 경비는 당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수납
- 보육료 내역: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 재료비,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 * 급·간식 재료비의 경우 시도교육청(지청)의 별도 지원이 있을 경우 별도 재원을 우선 활용
(예시) 유아 1인당 급·간식 재료비를 일 3,400원 편성하고 시도교육청 등에서 일 2,900원 지원 시, 보육료에서는 500원만 편성

[2026년도 시·도별 급·간식비 추가지원 현황]

(단위: 원)

구분	영아(0~2세)		유아(3~5세)	
	일단가	월단가	일단가	월단가
서울	262	5,240	1,034	20,680
부산	600	12,000	1,160	23,200
대구	350	7,000	350	7,000
인천	500	10,000	720	14,400
광주	930	18,600	930	18,600
대전	880	17,600	1,180	23,600
울산	400	8,000	400	8,000
세종	600	12,000	600	12,000
경기	370	7,400	3,520	70,400
강원	도비 지원 사업 없음, 시군 자체사업으로 지원 중			
충북	2,000	40,000	3,000	60,000
충남	600	12,000	600	12,000
전북	700	14,000	1,240	24,800
전남	도비 지원 사업 없음		누리과정 3~4세 1인당 800원, 250일 지원	
경북	650	13,000	650	13,000
경남	도비 지원 사업 없음, 시군 자체사업으로 지원 중			
제주	500	10,000	500	10,000

* 주: 월 20일 지원 기준으로 환산

* 자료: 교육부

□ 교육부는 표준보육비용 조사에 급·간식비가 구성요소로서 이미 포함되어 있고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따로 조사할 실익이 없다는 입장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187

참고 1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개요 (자료: 교육부)

1.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 ('26년 지원규모) 510천명, 3조 6,635억원 / 국비보조율 70.1%
- (지원방식) 부모보육료(바우처) + 기관보육료(보조금)

(부모보육료)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2세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원

- 부모의 국민행복카드 결제(방문, 인터넷, 모바일, ARS 결제)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급되며, 재원 아동의 출석일수에 따라 지원

(기관보육료)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에 대해 만0~2세, 장애아 보육 시 지원(1일 이상 출석 시 전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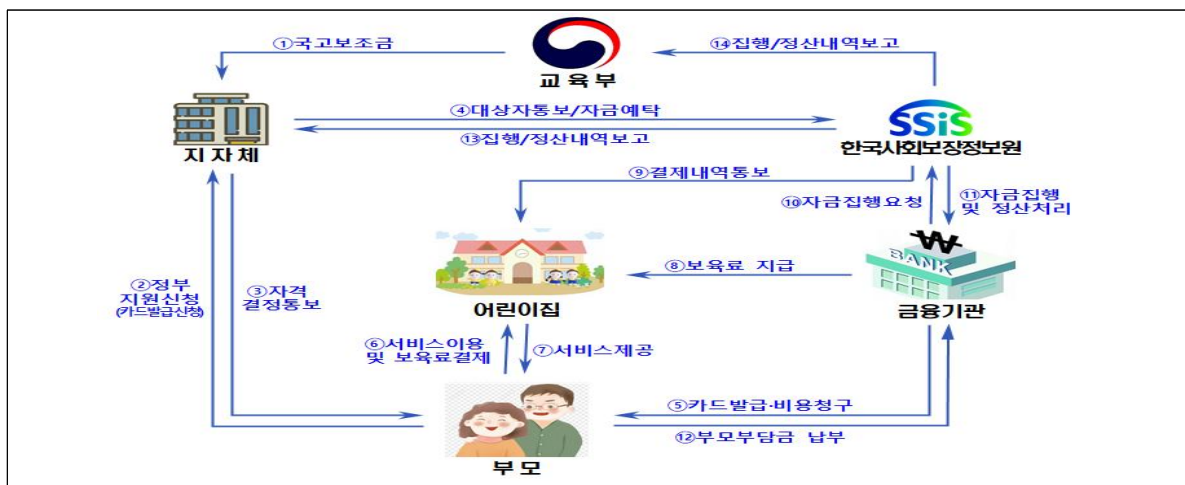
< '26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

(월 기준, 단위:천원)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장애아
계	1,277	892	682	1,376
부모보육료	584	515	426	634
기관보육료	693	377	256	742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 집행절차 >



2.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 (추진배경)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 보장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유치원·어린이집에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하고 학부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 * 누리과정 : 3~5세 대상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 (지원 대상)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동안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3세 이상 유아를 둔 학부모
- (지원 항목) 유아교육비(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보육료
- (재원 부담) 「영유아특별회계법」 제3조에 의하여 교육세(유치원)와 국고(어린이집)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원
- (지원 단가) 보호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취학기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단가를 정하여 지원

< '26년도 유아학비(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단가(월) >

구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보육료)	10만원	28만원	28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	7만원	7만원
계	15만원	35만원	35만원

자료: 교육부